

공계약조례 모델(안)

2011. 11. 29. 작성

2012. 1. 18. 개정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OO시(이하 '市'라고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기한 업무 및 市가 지정관리자에게 행하게 하는 공공시설 관리업무등에 관해 市, 市의 계약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되려는 자 및 지정관리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계약 또는 지정관리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에 기한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함께, 市의 사무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고용과 적정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고, 그로 인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이 조례의 목적, 이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고용과 노동조건의 유지·향상만이 목적이 아니다.
- ② 市와 市의 사무와 사업에 관하여 市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 또는 계약한 자가 공동으로 시민의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토목의 사업과 특정 위탁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 ③ 市가 민간기업등에게 행하게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법을 중심으로 하는 민사법이 적용되는 계약에 기한 것과, 행정처분인 지정관리에 기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이 조례는 그 양자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
 - 市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질의 향상 : 공계약조례에 의해 市의 지출이 증가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으나, 가격에 편중하여 품질이 낮아지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市의 지출삭감에 어느 편이 공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품질을 무시한 사무와 사업이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시민의 고용과 적정한 노동조건 확보 :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만 생각되었지만, 고용·노동정책의 당사자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실업자와 시민의 고용이 계속·증가하는 것은 市의 세수증대와 복지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이 적정하게 확보되는 것은, 시민의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

고,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시민이 가난하면 지역 경제 발전은 있을 수 없다)
 - 광역경제권에서는 '종사하는 자'가 반드시 시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금의 지불 상황 확보방법, 조사에 관한 비용과 인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나, 계약내용의 주지와 노동자의 신고를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임금 등의 인하가 수주경쟁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업의 후계자 부족, 기술·기능 전승의 장애를 피할 수도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래 각 호의 용어의 의미는 각호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공계약등 : 市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 되고,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경매 기타 방법에 의해 체결하는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준위임, 업무위탁 기타의 계약, 및 지방자치법 제24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기한 지정관리자와 市가 체결하는 지정관리협정을 말한다. 다만 市가 매수인이 되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적용을 제외한다.
2. 특정공계약 등 : 공계약 등 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 가. 특정공사 도급계약(다만 예정가격이 ~엔 이상의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
 - 나. 특정업무위탁등계약(다만 공사이외의 업무에 관한 업무위탁계약, 도급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으로, 예정가격이 ~ 엔 이상이며, 시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특정물품용역구입계약(다만 예정가격이~엔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 구입계약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라. 특정지정관리협정(다만 지정관리협정 중 시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장 등 : 市의 공계약 등을 체결하는 OO 시장, 공영기업 관리자 또는 교육위원회 등의 집행기관을 말한다.
4. 상대방 : 市와의 사이에 공계약등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5. 특정공계약등 수주자 : 상대방 중 특정공계약등을 체결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6.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업자 : 하도급, 재위탁 기타 어떠한 이름에 의하더라도 특정공계약등수주자 기타 시 이외의 자로부터 특정공계약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도급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특정공계약등 수주관계자 : 다음 사람들을 말한다.
 - 가.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업자
 - 나. 특정공계약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노동자과건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노동자과건법'이라고 한다)의 규

정에 의해 특정공계약등 수주자 또는 특정공계약 하도급업자에게 노동자를 파견하는 자

8. 노동자등 : 다음 사람들을 말한다.

가. 특정공계약등 수주자 또는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업자(동거의 친족만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고용되어, 특정공계약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기준법 제 9조에 규정한 노동자(가사사용인을 제외한다)

나. 노동자파견법 규정에 의해 특정공계약수주자 또는 특정공계약하도급업자에게 파견되어, 특정공계약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다.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기 위해, 특정공계약등수주자 또는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자와의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공계약등에 관한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임금 등 : 공계약등에 종사하는 노무의 대가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전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용주로부터 받은 임금

나. 전호 다. 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도급계약으로 얻는 수입

[공계약등]

① 공계약에는 「광의의 공계약」(계약의 상대방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도급계약과 업무위탁계약 만이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과 「협의의 공계약」(계약 상대방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계약)이 있다. 이 조례는, '광의의 공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 : 川崎市)

이에 대해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협의의 공계약」으로 한정하고, 나아가 업무 등을 한정하려는 선택도 가능하다 (예 : 多摩市、相模原市)

② 공계약의 체결방법에 관해서는,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또는 경매 등 4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34조 1항)

③ 市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에 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市가 사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는등, 이 조례에 의한 규율에 친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④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지정관리(지방자치법 등 244조 2, 3항)는 현행법제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해석되지만 그 실제 모습은 공계약과 거의 같기 때문에, 지정관리자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협정을 조례의 규율대상으로 한다.

[특정공계약등]

- ① 공계약등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조달(시가 예산지출을 하여 물건이나 용역을 취득하는 것)을 특정공계약등이라고 하여 계약체결 절차에 관해 종합평가방식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후술하는 제9조), 또한 계약내용으로 하여 노동자등이 지불받아야 하는 작업보수 하한액에 관한 규정 등을 둔다(제10조)
- ② 공계약규정은 「계약자유 원칙」에 기한 것이고, 민간사업자들은 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 때문에 획일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공계약규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공계약규정을 혐오하는 민간사업자밖에 없게 되고, 공계약등이 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특정공계약등의 범위에 대해 사업규모 내지 금액만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계약규정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시가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사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우려와 배려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공계약규정을 적용한다.
- ③ 예정금액을 낮추면 대상 노동자는 늘어나지만, 시의 사무량이 증가하므로, 실정에 맞추어 예정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장 등]

- ① 시가 체결하는 계약의 체결당사자는 시장만이 아니라 시 공영기업관리자인 경우도 있다.
- ② 시가 체결하는 지정관리협정의 체결당사자는 시장만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인 경우도 있다.

[상대방]

- ① 시가 체결하는 공계약등의 상대방으로서, 시가 물품등을 사는 경우의 판매자, 시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구매자, 시가 물품등을 임차하는 경우의 임대인, 시가 물품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 시가 공사등을 발주하는 경우 수급인, 시가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수탁자, 시의 시설 지정관리자가 있다.
- ② 시는 「계약자유 원칙」에 기하여, 공계약 등을 누구와 체결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시는 공계약등을 통해 정책목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계약 등의 상대방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배제하고, 공계약 등의 상대방으로 적절한 자를 적극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공계약 등의 상대방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둔다(제6조).

[특정공계약등 수주자, 특정공계약등 수급인, 특정공계약등 수주관계자]

- ① 특정공계약등의 상대방을 특정공계약등 수주자라고 한다. 특정공계약등 수주자는 계약상의 의무로서 작업보수하한액의 지불의무등의 의무를 부담한다(제11조).
- ② 특정공계약등 수주자의 하도급업자를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업자라고 한다.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업자와 市の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고, 이러한 자에 대하여 市가 공권력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리하여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업자가 市와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로서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업자를 관리감독하고,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업자가 임금체불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특정공계약등 수주자가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업자와 연대하여 임금지불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제11조).

③ 특정공계약등 수주자 또는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업자의 의무를 위해 노동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에 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노동자등, 임금등]

① 취업 근로자 중에는 실태는 노동법상의 노동자이지만, 계약형식상 독립자영업자의 외형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에게 외주 공임을 지불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편이 소비세 부담도 가벼워지고, 사회보험료·노동보험료 부담도 면하고, 노동법 규제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이러한 독립자영업자의 외형을 취하는 사람에 관해서도, 스스로 노무를 공급하여 그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참조 : 川崎市条例、多摩市条例、相模原市条例).

③ 형식상 외형상 개인 도급의 형태를 취해도, 실질적으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8. 호의 가.에서 말하는 노동자에 포함된다.

제3조 [市の 책무]
市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계약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진다.

제4조 [공계약등의 상대방이 되려고 하는 자등의 책무]
① 공계약 등의 상대방이 되려고 하는 자는, 市の 책무, 또는 사업의 실시에 관한 자로서 사회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市가 실시하는 계약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계약 등의 상대방은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책의 기본방침]
공계약 등에 관한 시책은, 다음 기본방침에 기해 책정되고, 실시되는 것으로 한다.

1. 공계약 등의 과정 및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계약 등의 상대방이 되려고 하는 자와의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것
2. 담합 기타 부정행위 배제를 철저히 할 것
3. 계약에 의해 지구환경의 보전, 건강, 문화적 시민생활의 형성, 지역복지 향상 기타 市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것
4.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유의하면서, 市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의 증대를 도모할 것
5. 경제성에 배려하면서 공계약 등의 상대방이 되려는 자의 기술적 능력 및 사회공헌의 구조 기타 가격 이외의 다양한 요소도 고려하여, 가격 및 질이 종합적으로 우수한 내용이 되게 할 것
6. 공계약 등에 의해 市의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환경 정비를 도모할 것
7. 남녀평등·남녀공동참여 증진,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조화에 기여할 것

- ① 일반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에서 가격 이외의 조건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10의 2, 제167조의 13)
- ②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품확법)
- ③ 입찰담합등 관여행위의 배제 및 방지, 그리고 직원에 의한 입찰 등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담합방지법)
- ④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관해, 「市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WTO정부조달 협정에 유의할 필요
- ⑤ 공공서비스기본법 제11조

제6조 [공계약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격]

① 시장등은 공계약 등의 상대방에 관해서, 법령 및 市의 규칙 소정의 계약체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 뿐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에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지 않은 자와는 공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다.

1. 과거 상대방(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법령 위반으로 형사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판결의 확정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가. 사람의 건강에 관한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일본국내 지방자치체가 제정한 조례

- 나. 노동기준법, 최저기준법 또는 노동안전위생법 기타 노동조건에 관한 법률
- 2. 과거 상대방(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행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 가. 독점금지법 제3조 또는 제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또는 배제조치 명령
 - 나. 노동조합법 제7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 3. 과거 상대방으로서 다음의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해소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 가. 사업세, 시세 기타 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사용료, 수수료
 - 나. 사회보험료, 노동보험료
- 4. 조례로 정한 장애인고용상황 보고서, 남녀공동참여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 계약 1건 당 금액이 ~ 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시장 등 및 상대방은, 공계약 등을 체결할 때, 공계약 등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해야 한다.
 - 1. 상대방이 시장 등에 대하여 법령 및 市の 규칙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항 제1 내지 3호 소정의 각 요건을 충족한 것을 서약하는 것
 - 2. 공계약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격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전호 서약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 시장 등은 공계약 등을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동시에, 시장등이 정한 상당기간에 거쳐 다른 공계약 등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
 - ③ 시장등은 제1항 소정의 공계약 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격이 없는 자와 공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법 이외에는 市가 필요한 물건이나 용역을 취득할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달리 방법이 있어도 가격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 경제합리성을 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시장등은 市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입찰에 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4 제1항은 절대적으로 “참가시킬 수 없는” 자(파산자등)을 정하고, 동조 제2항이 “참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즉 입찰자격 인정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부정행위자등)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167조의 5는 지방자치체의 수장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긍정하기 위한 적극 요건(실적, 종업원수 기타)를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② 도급공사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든 경우에 입찰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는지에 관해 참고자료로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등의 조치요령 중앙공공공사계약제도운영 연락협의회모델」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를 참고하여 「~市 계약규칙」 「~市 일반 경쟁참가정지및지명정지등조치요강」 「~市 경쟁입찰참가자격자지명정지조치요강」 「~市 입찰등참가지명정지기준」 등 여러 명칭의 규칙에 의해, 입찰등의 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담합, 부정행위, 뇌물중여, 사고등)과 자격정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③ 이러한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규칙에 의한 계약 상대방 자격에 관한 정함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규칙에 의한 제한대상이 도급공사에 한정되거나, 일반경쟁 입찰과 지명경쟁입찰에 한정되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예도 있다. 그래서 조례로 법령과 규칙과의 저축과 모순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공계약등의 상대방 자격요건 전반에 대해 보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④ 환경과 노동조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반사회성이 강하여, 상당기간 공계약 등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 관해, 기존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강과 기준등을 보면, 노동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사상한 경우에 대해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 수개월 정도 지명정지하는 예가 적지 않다. 그러나 노동안전위생법, 노동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반사회성은 단순히 불구속입건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를 정한 예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해 조례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⑤ 공정거래 파괴와 단결권 부인에 의해 행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반사회성이 강하여, 상당기간, 공계약 등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관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7조에 위반하여,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 교부시부터 자격정지를 하는 예(大阪府), 명령확정시부터 지명정지를 하는 예(横浜市)가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명령이고, 이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불복해도 그것이 취소 도리 때까지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大阪의 예와 같이 명령이 교부된 날부터 일정 기간은 계약당사자가 될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⑥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의 체납하는 자도, 공적 예산의 지출대상자로 되거나 공적 자산의 매도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⑦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에 관한 선구적인 대처의 예로, 「후쿠오카현 후쿠츠(福岡県 福津市) 남녀가 함께 걸어가는 마을만들기 기본조례」가 있다. 이 조례에서는 사업자가 공사 등 계약을 희망하여 업자등록을 할 때는 남녀공동참가 추진상황을 시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

하고 있다. 공계약을 통해서 직장에서의 남녀공동참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계약체결시 장애인 고용상황보고서 제출에 대해서는 “오사카부 장애인 고용촉진등과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의무화되어 있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어, 수의 계약을 포함한 일정액 이상인 경우 의무화해야 한다.

제7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계약]

지방자치법 제9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계약은, 예정가격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가격에 사양서 또는 설계서에 기재된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 ~ 엔 이상의 공사 또는 제조의 도급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121조의 2

제8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17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한 계약은, 다음 계약으로 한다.

1. 사무용기기, 계측기기, 수송용기기 기타 물품의 임대차계약으로, 다음 해 이후에 거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당해 물품을 빌리는 것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
2. 용역의 제공을 받는 계약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전호에 정한 계약에 관한 물품의 보수점검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약
 - 나. 계약 상대방이 당해 용역 제공에 관한 업무의 숙련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계약
 - 다. 계약 상대방이 조달하는 당해 용역 제공에 필요한 물품, 설비 등의 초기투자액의 회수에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다음 해 이후에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
 - 라. 가. 내지 다. 까지 든 것 외에, 다음 해 이후에 거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당해 용역 제공을 받는 것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계약

① 지방자치법 제234조의 3

제9조 [특정공계약등의 절차]

특정공계약등은 주민생활에 밀착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특히 중요한 사업으로, 그것이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요청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市는 상대방 선택에 있어서, 가능한 사회적 요청 실현의 공헌을 당해 평가항목에 더한 종합평가방식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계약 전부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노력의무를 부과함에 그친다.
- ② 종합평가낙찰방식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10의 2
- ③ 지정관리자제도 : 지방자치법 244조의 2 제3항
- ④ 지명경쟁입찰 : 지방자치법 234조 제2항 시행령 167조
- ⑤ 공적 시설 설치, 관리, 폐지 : 지방자치법 244조의 2
- ⑥ 종합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과 요강 등을 정하고 있다. 종합평가방식에 관한 규칙과 요강 등이 전혀 없는 경우는 조례로 종합평가방식에 대해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합평가방식에 관한 기존 규칙과 요강이 있는 경우는, 이것에 저촉하거나 모순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 ⑦ 기존의 규칙과 요강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평가방식의 내용에 관해서 다음 사항의 유무에 대해 정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 (1) ISO 9000, ISO 14000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2)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적정화 사업실시기관에 의한 「안정성우량사업소」 인정을 받고 있다
 - (3) 시내에 사업소가 있다
 - (4) 市와 재해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5) 시민을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다
 - (6) 제2조 제1항 제2호 나·다의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당해계약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계획이 있다
 - (7) 남녀평등참가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 (8) 고령자 취업촉진(고령자취업률 향상·65세까지 고용확보책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 (9) 장애인의 취업촉진(법정고용율 달성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 (10) 육아지원촉진(유아·개호휴업법의 자녀양육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상황, 차세대 육성지원대책촉진법에 기한 일반사업주 행동계획 책정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10조 [특정공계약등에서의 작업보수하한액]

- ① 시장은 특정공계약등에 관해서 노동자등(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당 임금 하한액(이하 '작업보수하한액'이라 한다)을 정한다.
- ② 시장은 작업보수하한액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 노동자등에 대해 각호에서 정한 금액 기타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1. (특정공사도급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각 직종마다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노동자에 대해서) 市가 예정가격의 예산에 쓰이는 공공공사설계노무단가에서의 직종별 단가
 2. (특정공사도급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호 이외의 노동자등에 대해서) 市 직원의 임금, 시내 동종 노동자의 임금, 및 생활보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서 시에 적용되는 액
 3. (특정업무위탁계약 및 특정지정관리협정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등에 대해서) 건축보전업무 노무단가 및 설계업무위탁등 기술자 단가에서의 직종별 단가, 市 직원의 임금, 시내 동종노동자의 임금, 및 생활보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서 시에 적용되는 금액
 4. (특정물품용역구입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등에 대해서) 市 직원의 임금, 시내 동종노동자의 임금, 및 생활보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서 시에 적용되는 금액
- ③ 시장은, 작업보수하한액을 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 市 공계약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작업보수하한액을 정한 때는, 이를 고시한다.

- ① 공공공사설계 노동단가, 건축보전업무 노무단가 등은 실태조사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공공사설계 노무단가의 ~ %」라고 하지 않고 참고에 그쳐야 한다.
- ② 도급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자, 미숙련자, 숙련된 고령자를 구별하지 않고 공통의 작업보수하한액을 설정하면, 장년기 숙련기능자의 임금 시세를 인하하고, 미숙련자 및 숙련된 고령자여서 작업제한을 받는 자에게 임금 시세 이상을 지불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각 직종별 일정 비율의 자(숙련기능자)에게 지불해야 할 작업보수하한액과 그 이외의 자에게 지불해야 할 작업보수하한액의 2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에 종사하는 장년기 숙련기능자의 수를 확보하고, 미숙련기능자들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실례 : 多摩市公契約條例)

- ③ 都道府縣(기초 지자체)의 경우, 군 단위를 포함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생활보호기준을, 도·시 단위인 경우에는 市 직원과 동종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자는 생각이다.
- ④ 임금 등 최저액이 설정됨으로써, 임금 인하가 수주를 위한 경쟁조건이 되지 않고, 기업간 공정경쟁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 ⑤ 공공서비스기본법 제11조

제11조 [특정공계약등의 내용]

특정공계약등 중 계약에서는 시장 및 수주자 상호 대등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을, 지정관리협정에서는 시장 및 지정관리자가 공동으로 공공시설 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자가 협력, 공동으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고, 제3조 및 제4조가 규정한 각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노동자등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임금 등 : 특정공계약등 수주자 또는 특정공계약등 수주관계자가 특정공계약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등에게 지불하는 당해 업무 관련 임금 등은 작업보수하한액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
- 2. 특정공계약등 수주자의 연대책임 : 특정공계약등 수주관계자가 노동자등에 대해 지불한 특정공계약등의 업무 관련 임금등의 금액이 작업보수하한액을 하회하는 때에는, 그 차액분의 임금등에 대해서, 특정공계약등 수주자는 특정공계약등 수주관계자와 연대하여 당해 노동자등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를 진다는 것
- 3. 고용계속노력의무 : 특정공계약등 수주자는 계속성 있는 업무에 관한 특정공계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당해업무 질의 유지 및 계속성 확보를 배려하여, 당해 특정공계약등의 체결 전부터 당해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들 중 희망하는 자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것
- 4. 노동관계법령 준수의무 : 특정공계약등 수주자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법령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업자와의 사이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당해 도급계약에서 특정공계약등 하도급업자가 이러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을 정한다는 것
 - 가. 노동기준법
 - 나. 노동조합법
 - 다. 노동안전위생법

라.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마. 노동계약법

바.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단시간노동자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노동자 대책 기본방침

5. 노동자대장 작성·제출 의무 : 특정공계약등 수주자는 특정공계약등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등의 이름, 직종, 시간, 임금지급일 기타 규칙등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작성하여, 작업소등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에 관해 시장등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

6. 노동자등의 신고권 : 노동자등(노동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본조에서 이하 같다)는 특정공계약등 수주자 또는 특정공계약등 관계자가 당해 노동자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 시장등 또는 특정공계약등 수주자 또는 특정공계약등 관계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

7. 신고노동자등에 대한 불이익취급 금지 : 특정공계약등 수주자 및 수주관계자는 노동자등이 전호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노동자등에 대해 해고, 도급계약의 해제, 기타 불이익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8. 노동자등에의 주지의무 : 특정공계약등 수주자는 다음 사항을 특정공계약등 종사 노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교부하는 방법에 의해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

가. 이 조례가 적용되는 노동자등의 범위

나. 작업보수하한액

다. 임금등 지급액이 작업보수하한액에 달하지 않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특정공계약등 수주자가 연대하여 지급 의무를 진다는 점

라. 노동기준법에 규정한 소정노동시간 및 휴일

마. 제6호 신고를 할 경우 연락처

바. 제6호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도급계약 해제 기타 불이익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점

9. 특정공계약등 수주자에 대한 검사, 질문, 조사 등 : 시장 등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주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원에게 당해 사업소에 들어가 노동자등의 노동조건 또는 계약조건에 관한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가. 노동자등이 제6호의 신고를 한 경우

- 나.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 준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특정공계약등 수주관계자에 대한 검사, 질문, 조사 등 : 특정공계약등 수주자는, 특정공계약등 수주자와 특정공계약등 수주관계자와의 사이 계약에서, 시장등이 전호의 가. 또는 나.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계약 등 수주관계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직원으로 하여금 당사무소에 들어가 노동자등의 노동조건 또는 계약조건에 관한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11. 신분증명서의 휴대·제시 : 전 2호의 규정에 의해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12. 시정조치명령 : 시장 등은 제9호 내지 제10호의 보고 또는 현장검사 결과, 특정공계약등 수주자 또는 특정공계약등 수주관계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특정공계약등의 정함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당해 특정공계약등 수주자에 대해, 신속하게 당해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것
13. 시정보고의무 : 특정공계약등 수주자는 전호 규정에 의해 위반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강구하고, 시장 등이 정한 기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
14. 특정공계약등의 해지 또는 지정취소 또는 일부 정리 : 시장등은 특정공계약등 수주자 또는 특정공계약등 수주관계자가 다음 가. 내지 다.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특정공계약등이 계약인 때에는 당해 특정공계약등을 해제하고, 당해 특정공계약등이 지정관리협정인 경우에는 당해 지정관리협정에 관한 공공시설관리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
- 가. 제9호 또는 제10호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한 때
- 나. 제12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
- 다. 제13호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 라. 기타 특정공계약등을 계속하기 어려운 약정위반이 있는 때
15. 계약해제등의 효과 : 전호 규정에 따라 공계약을 해제 또는 지정관리협정에 관하여 지정을 취소 또는 업무 정지명령(이하 '해제등'이라고 한다)을 한 경우, 특정공계약등 수주자 또는 특정공계약등 수주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시장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 특정공계약등 수주자는 특정공계약등의 해제 등에 의해 시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등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 특정공계약등 수주자는 시장등이 정한 상당기간, 市 기타 공계약등의 상대방이 되는 자격을 잃는다는 것

16. 공표 : 시장등은 특정공계약등을 해제하였거나, 공계약등의 종료 후에 수주자 또는 수주관계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규칙의 정함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는 것

17. 위약금 : 시장등은 특정공계약등 수주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특정공계약등에서 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

① 협의의 공계약등(공계약등에 관계된 업무에 관하여 노동자를 사용하는 공계약)의 규율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약상 의무로서, 수주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② 제1호에서 제17호까지 구체적인 의무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다.

1. 노동자에 지급해야 할 임금 등 (川崎市、野田市、多摩市、相模原市)
2. 특정공계약등 수주자의 연대책임 (川崎市、野田市、多摩市、相模原市)
3. 계속고용 (野田市、多摩市)
4.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 (多摩市)
5. 노동자대장 작성·제출의무(川崎市、野田市、多摩市、相模原市) : 川崎市 조례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 각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불액을 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多摩市조례와 相模原市조례는 임금지불의 기재는 불필요하다고 하여 노동자의 동의도 요하고 있지 않으며, 작업보수하한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만 요구하고 있다. 각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불액의 보고를 우선하여,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름이 익명화 처리된 대장이 제출되어도 어쩔 수 없는지, 아니면 임금지불액의 보고는 없어도 이름·직종·노동시간등의 완전 장악을 우선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6. 노동자의 신고권 (川崎市、多摩市、相模原市)
7. 신고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취급 금지 (川崎市、多摩市、相模原市)
8. 노동자에 주자의무 (川崎市、野田市、多摩市、相模原市)
9. 특정공계약등 수주자에 대한 검사, 질문, 조사 (川崎市、野田市、多摩市、相模原市)
10. 특정공계약등 주구관계자에 대한 검사, 질문, 조사 (野田市、多摩市) : 수주관계자(수급기업, 노동자과견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검사, 질문, 조사등의 권한에 관해, 多摩市조례에서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매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野田市조례에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권력적 규제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1. 신분증명서의 휴대·제시 (川崎市、野田市、多摩市、相模原市)
12. 특정공계약등 수주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川崎市、多摩市、相模原市) : 시정조치명령의 대상에 대해서, 川崎市, 多摩市、相模原市の 각 조례에서는, 市와 특정공계약등을 체결한 수주자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野田市조례에서는 수주관계자(수급인·노동자·파견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관해, 검사·질문·조사를 하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자에 대하여 직접 시정조치명령을 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野田市조례에서는 이러한 권한에 관해 계약상 권리의무를 매개로 하지 않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적 규제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3. 시정보고의무 (川崎市、野田市、多摩市、相模原市)
14. 계약해제권 (川崎市、野田市、多摩市、相模原市)
15. 해제등의 효과 (川崎市、野田市、多摩市、相模原市)
16. 공표 (川崎市、野田市、多摩市、相模原市)
17. 위약금 (野田市、多摩市)

제12조 [공계약등심의회]

- ① 제10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에 정한 것 외에, 제5조 제6호의 기본방침에 기하여 책정된 공계약등에 관한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市 공계약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 이 조례의 시행상황에 대해 검증을 행하여, 그 결과에 기해 필요할 때는, 시장에게 제언할 수 있다.
- ③ 심의회는 위원 5인 이내로 조직된다.
- ④ 위원은, 사업자, 노동자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심의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 ⑦ 임시위원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 기타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 ⑧ 임시위원은 특별한 사항에 관한 조사의무가 종료하면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 ⑨ 심의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그 심의에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 또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⑩ 전 각항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① ILO 제94호 조약(공계약) 제2조 제3항은, “계약에 삼입되어야 할 조항의 조건 및 그 변경은, 권한 있는 기관이 관계있는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해당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와 협의하여, 국내사정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계약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심의회에는 노사대표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 ② 川崎市 및 多摩市 심의회 구성은, 학식 1, 노2, 사2 이고, 相模原市の 심의회 구성은 학식 2, 노2, 사2이다.
- ③ 공계약등을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野田市에서는 시장이 주도하여 조례 개정을 반복했다. 또한 多摩市에서는 심의회에서 시행상황을 검증하고 제언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참조하면서 시장이 조례와 규칙등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제13조 [지정출자법인등의 계약]

- ① 市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것(이하 ‘지정출자법인’이라고 한다) 및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선정사업(동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한 선정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자로 선정된 자(이하 ‘선정사업자’라고 한다)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지정출자법인 또는 선정사업자가 행한 계약(선정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선정사업에 관한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市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市는 전항에 규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정출자법인, 또는 선정사업자에 대해 지도 또는 조언을 해야 한다.

제14조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